

의안번호	제 982 호
의결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1월 18일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82
------------	-----

제안연월일 : 2022년 1월 1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u> ----- ----- ----- ----- ----- ----- --.</p>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